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법 조제목 변경에 따른 조례 조제목 변경(안 제25조)

○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오기 수정(안 제25조 제2항)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안 제25조 제3항)

5. 검토의견

- 상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조문명이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조문명을 “재건축사업 등 소형주택비율”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로 변경.
- 법 제54조제4항3호 및 제4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비율을 100분의 50이하(제3호), 100분의 75이하(제4호)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으나 10분의 50으로 오기함에 이를 바르게 정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 신설된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조례 제25조제3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정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한 타 시·도의 조례 운영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조례 개정과 개정내용은 시의적절하며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적 조치로 판단 됨

붙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